

2. 각종 의안의 접수·인쇄·배부·이송 등의 처리
3. 본회의,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
4. 각종 회의록 작성·보관·발간 및 열람
5. 의결문서의 보존·발간·이송 등의 처리
6. 의안문서의 보존·관리
7. 소관자치법규의 정비
8.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·보고에 관한 사항
9. 의안·청원 관련자료의 수집·연구·검토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

제 6 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제5조중 “주무 계장”을 “의정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중 중학교(남부)의 강서중학교의 명칭란 중 “강서중학교”를 “세일중학교”로 하고, 영등포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“영등포여자중학교”를 “영원중학교”로 하며, 중학교(강동)의 풍납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“풍납여자중학교”를 “풍성중학교”로 한다.

별표 5중 특수학교의 서울정문학교란 다음에 서울광진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특수학교

3	서울광진학교	광진구 구의동 587-52
---	--------	----------------

별표 7중 유치원(서부)의 서울상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북성유치원 및 서울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, 유치원(남부)의 서울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, 유치원(강동)의 서울가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세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서울잠신초등학

교병설유치원란을, 유치원(성동)의 서울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사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유치원(서부)

7	서울북성유치원	서대문구 북아현동 215
8	서울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	마포구 대흥동 51

유치원(남부)

8	서울영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3
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유치원(강동)

8	서울세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송파구 오륜동 89-23
9	서울잠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송파구 잠실동 22-10

유치원(성동)

7	서울사근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성동구 사근동 291-5
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명칭변경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중 직무분야 교육위원회 의안조사관란을 삭제하고, 학생수련담당란의 5급 상당, 6급 상당, 7급 상당, 8급 상당의 임용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[별표]

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

구분 직무분야	일반직 상당계급	임용자격
속기록 담당	7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
	8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별정직 9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
	9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
예비군중대장	6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군의 보병·포병·기갑·공병·정보·통신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위 이상인 자
학생수련담당	5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4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,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지도경력 7년 이상인 자
	6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
	7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
	8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사진 담당	7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사진학과 졸업자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위에 준하는 관련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
	8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행정기관에서 당해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사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
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
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총무처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

구분 직무분야	일반적 상당계급	임용자격
속기록 담당	7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 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
	8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 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한글 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별정직 9급 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
	9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예비군종대장	6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군의 보병·포병·기갑·공병·정보·통신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 위 이상인 자
학생수련담당	5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4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,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지도경력 7년 이상인 자
	6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6년 이사인 자 일반직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,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지도경력 4년 이상인 자
	7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
	8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사진 담당	7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사진학과 졸업자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위에 준하는 관련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
	8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행정기관에서 당해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사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'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1998년 11월 30일, 서울특별시장
나. 회부일자
1998년 12월 1일
다. 상정일자